
환경보건센터 지정 · 운영지침

2019. 10.



환경부

C/O/N/T/E/N/T/S

제1장 총 칙	1
제2장 센터의 지정	5
제3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13
제4장 센터 평가단 구성·운영	21
제5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25
제6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1
제7장 사업성과 평가	47
제8장 보 칙	53

CONTENTS

별표1	센터 지정 심사방법	58
별표1-1	센터 지정 서면심사 평가표	59
별표1-2	센터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	60
별표2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61
별표3	환경보건센터 정기평가표	64
별표3-1	환경보건센터 정기평가단 평가표	70
별표4	환경보건센터 종합평가표	71
별표4-1	환경보건센터 종합평가단 평가표	72
별표5	환경보건센터 연합회 사무총장 및 상근직원의 자격기준 ..	73
서식1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74
서식2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78
서식3	예산요구서	81
서식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84
서식5	사업수행상황보고서	85
서식6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검토서	87
서식7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검토서	88
서식8	단위사업별 달성도 및 난이도 자체평가	89
서식9	연구·시험분석용 소모품 관리대장	90
참 고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91



[제 1 장]
총 칙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09 (2007. 7.19)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42 (2009. 2. 2)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073(2009. 6. 5)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914(2010.10.17)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509(2011. 8.31)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22 (2013. 1.22)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371(2013. 9.23)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551(2014.10.02)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055(2015.11.30)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638(2016. 9.22)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956 (2019. 2.26)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650(2019.10.15)호

제1장 총 칙

1.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환경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 취소 절차와 방법,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성과 평가, 환경보건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6조(센터의 지정·운영), 제26조의2(센터의 평가), 제27조(센터의 지정취소 등)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20조의2(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0조의3(센터 재지정), 제20조의4(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1조(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센터의 지정신청),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3 정 의

- 1) “주관기관”이란 센터의 구성·설립을 주관하고 센터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센터운영을 지원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및 병원 등을 말함
- 2) “협력기관”이란 센터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센터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업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하는 센터 소재 지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보육기관, 연구소, 단체, 기업체 등으로서 센터 및 주관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함



[제 2 장]
센터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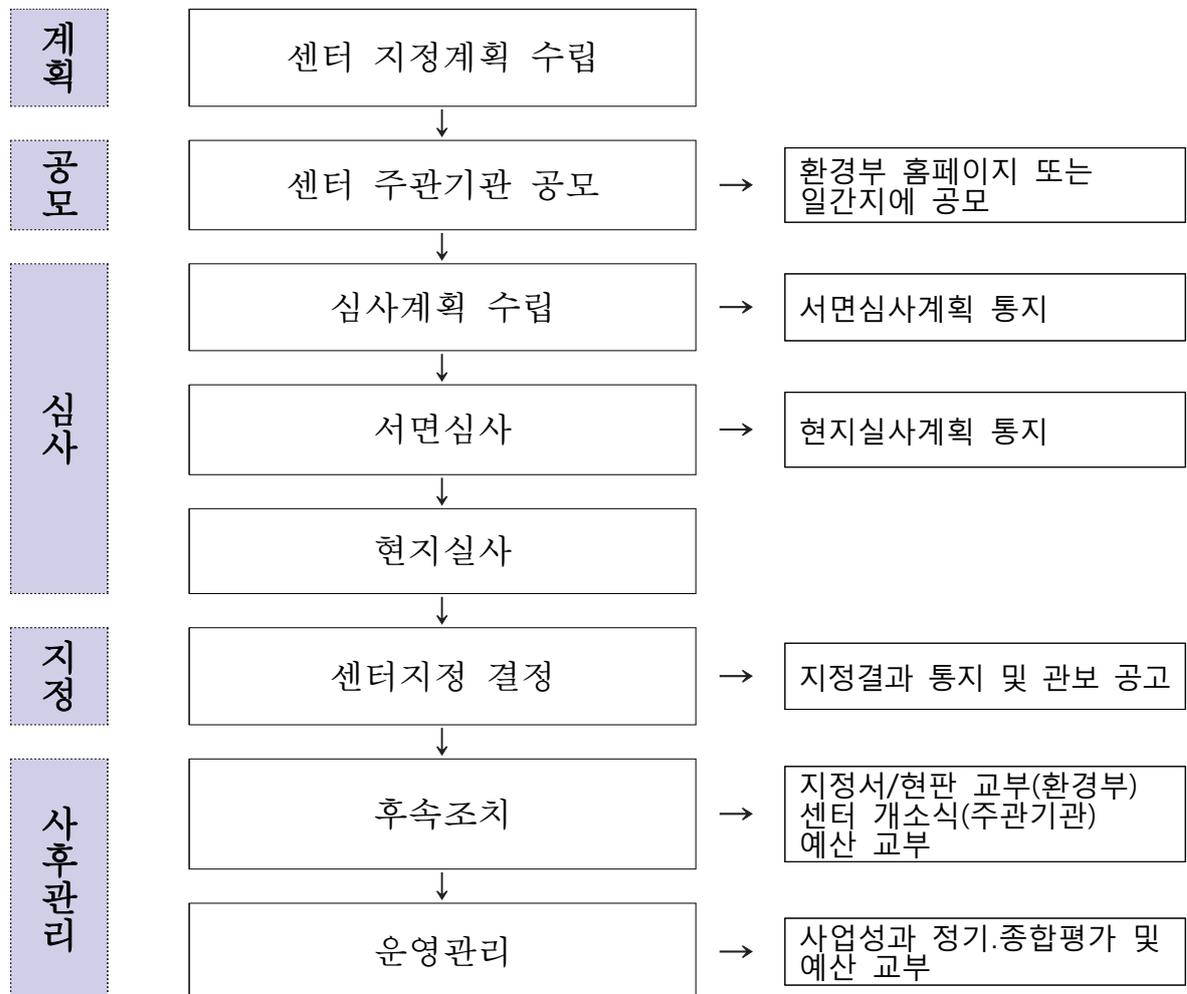
제2장 센터의 지정

2.1 센터의 지정 목적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 환경성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2.2 센터의 지정 절차

1)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환경보건센터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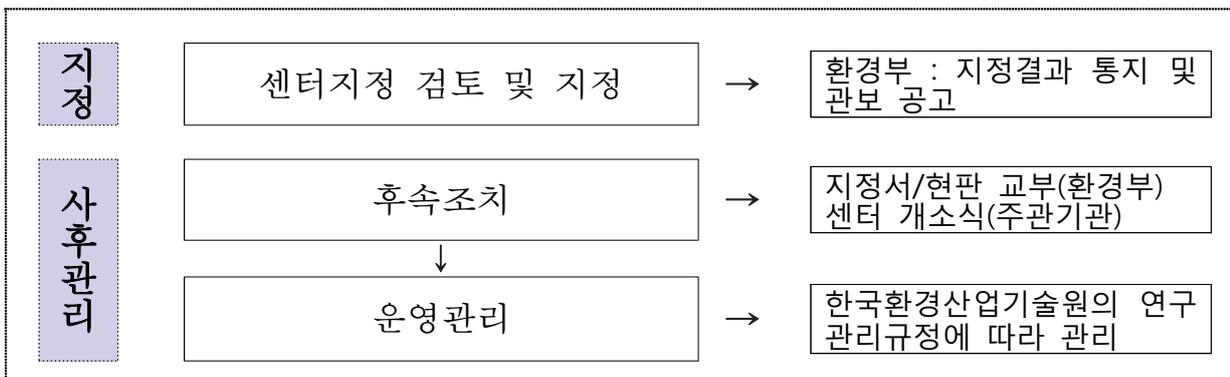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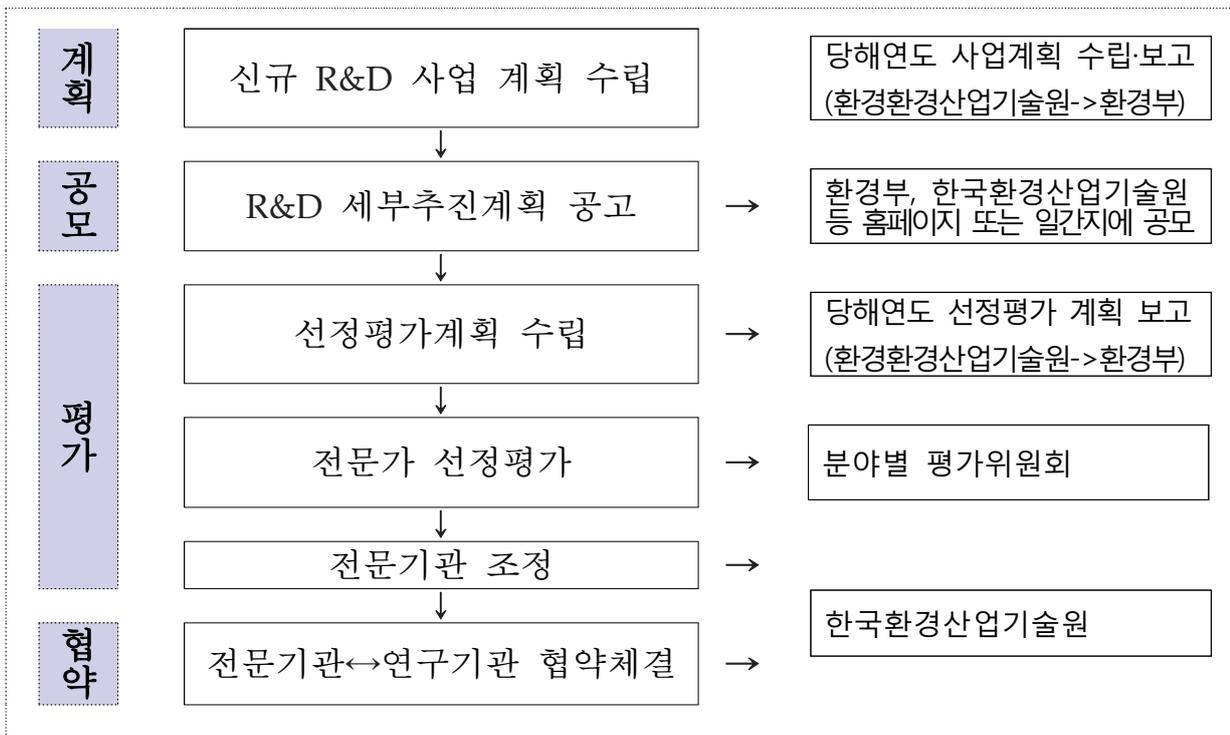
2) 국고보조금 미지원 대상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가) 환경보건법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환경보건분야 환경기술개발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2.2.1 센터 지정계획의 수립

- 1) 센터는 환경성질환 중점연구, 환경보건정책 지원, 권역별/지역별 환경보건 기반 구축 등의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 또는 재지정
- 2) 신규 환경보건 이슈 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 지정계획 수립 가능
- 3) 기존 센터의 지정서 반납 또는 취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건센터의 유형별 추가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정 추가
- 4) 센터 지정 및 재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3년으로 지정
 - ※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16.7) 이전 지정·운영중인 센터의 경우 특정지역의 역학조사 지원센터는 유효기간을 3년('16.10.1~'19.9.30), 그외는 5년('16.10.1~'21.9.30)으로 지정('16.9.27)
 - ※ 국고보조금 미지원 대상 환경보건센터는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함

2.2.2 센터 주관기관 공모

- 1) 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센터를 신규 및 재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 설립을 위한 주관기관 공모
- 2) 공모는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
 - ※ 환경오염사고 등 시급한 경우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모 없이 지정 가능
- 3) 응모자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가) 연구인력 현황
 - 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 다) 지정 분야 연구 실적
 - 라) 지정 후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서식 1>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서식 2>
 - 마)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바)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 사)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보호계획서(매칭펀드 30%)
- 아) 그 밖에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2.2.3 심사

1) 심사단 구성

- 가) 심사단은 공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심사단과 현장심사단으로 구분하여 구성
- 나) 심사단의 단장은 환경보건정책관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로 하여 단장을 포함한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수가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다) 현장심사단은 서면심사단 중에서 선정하되, 현장심사 위원수가 부족한 경우 서면심사단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선정 가능

2) 심사 방법

- 가) 심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별표 1>의 센터지정 심사방법에 따라 서면심사(80점)와 현지실사(20점)로 구분하여 실시

※ 단, 신청기간이 단일기관일 경우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3) 서면심사<별표 1-1>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가) 센터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부합할 것
- 나) 센터 인력 및 조직 구성이 사업수행에 적합할 것
- 다)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
- 라) 시설·장비, 협력기관 현황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여건 및 능력
- 마) 센터 지정분야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4) 현장심사<별표 1-2> 평가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 센터 사무실의 별도 확보 여부
- 연구·시험·분석 등을 위한 시설의 확보 현황
- 기자재 및 시설·장비 확보 현황

5) 심사에 따른 지정결정

가)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지정대상 센터 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지실사 실시

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기관을 센터로 지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소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고 다시 공모

2.2.4 센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환경부장관은 새로 지정된 센터에 대해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고, 센터 지정서 및 현판 교부

2.2.5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후속 조치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한 경우에는 즉각 지정취소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환수조치
-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으로 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 3) 법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3년 동안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하고, 미집행 국고 잔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환수 조치
- 4) 센터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재지정계획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되며, 그 밖에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 5) 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의 변경 등으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을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

1차	2차	3차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6) 위 5)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
- 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영향으로 정기 및 종합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
 - 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이 변경되어 센터의 사업을 수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
 - 다) 센터에서 제시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평가단이 인정한 경우
- 7) 국고보조금 미지원 대상 환경보건센터는 해당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름
- 8)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지정이 취소된 센터의 장은 센터 지정서 및 현판 반납, 그간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DB 등)을 환경부로 이관

2.2.6 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 1)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재산 등을 검사 가능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2) 환경부장관은 자료 및 현장조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3) 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센터 지정·운영 지침 등 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제3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제3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3.1 센터장의 선임

- 1)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지정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센터장을 선임

기관	대학	의대·병원		연구기관
		임상분야	기초분야	
자격	정교수 이상	과장급 이상	주임교수 이상	책임연구원 이상

- 2) 센터장이 사임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하여 환경부장관에 신고

3.2 센터의 구성

- 1) 센터는 사무국을 두고, 센터의 기능 및 여건에 맞게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2)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2.1 센터 사무국

- 1)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

※ 사무국장은 가급적 환경보건분야 전공자나 경력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여 인력 구성·참여내용은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별도 협의 필요)

- 2)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가)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예산회계 업무는 주관기관 등에서 대행 가능)
- 나)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다) 센터 기능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라) 센터 소유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
- 마) 기타 센터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3) 사무국 상근직원에 대한 출장, 휴가 등 복무관리

가) 사무국내에 출장·휴가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운영

나) 출장, 휴가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르거나 센터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3.3 센터의 사업범위

1) 환경성질환과 환경유해요인과의 상관성 연구·조사

- 환경유해인자, 노출, 위해성평가, 건강영향평가, 환경보건평가 등 중점 연구

2) 환경성질환자 모니터링 및 DB 구축

3) 환경성질환 조사 기법, 관리지표 개발 지원

4) 권역별/지역별 환경보건계획 수립 지원, 지역 환경보건 대응, 지역 환경보건 전문가 육성, 청원, 건강영향조사(폐광·산단·발전소), 역학조사 등 지원

5) 환경요인과 질환간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장기간 추적조사 사업

6) 환경성질환 관련 정보제공 및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7) 질환자, 취약계층, 일반국민 등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8)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분석 등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지원

9)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3.4 협력사업

1) 센터는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수행 가능

가) 센터 직원 중 협력사업의 사업총괄책임자를 지정

나) 사업총괄책임자는 협력사업의 △진도관리, △인력지원, △기자재 및 시설의 지원, △사업추진 및 결과발표, △예산집행 등 사업의 진행과 관리를 담당

2)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가) 사업의 수행범위 및 방법, 수행기간, 사업비

나) 사업총괄책임자, 수행기관, 사업별 책임자 및 참여자

다) 사업비 부담, 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의 지원

라) 사업결과의 보고 및 보완절차, 활용방안

마) 연구결과 발생된 성과물이 있는 경우 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바)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사)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5 센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

1) 센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연합회를 구성·운영

2) 센터 연합회는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기획관리팀, 재무운영팀으로 구성·운영

3) 센터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센터가 공동(국고보조금 미지원 대상 센터는 제외)

3.5.1 센터 연합회

1) 위원은 각 센터의 장으로 구성

2)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은 센터의 장 중에서 연합회에서 선출하며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중도사임 등의 사유로 연합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연합회장을 다시 선임하고 임기를 새로이 시작함

3) 연합회의 공동사업발굴·추진 등 기획관리팀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회 사무총장 및 기획관리팀장과 각 센터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

- 가) 기획위원회 회의는 연합회 사무총장이 주재. 다만, 사무총장 부재 시에는 기획관리팀장이 대행
- 4) 연합회 사무총장은 각 센터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사무국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음
- 5) 연합회에서는 환경보건포럼, 환경보건컨서트, 환경성 질환연구, 환경보건 박람회 등 공동사업, 환경보건 교육교재 발간 등 교육·홍보사업 등 수행
- 6) 연합회에 예산 지원시 연합회는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후 당해연도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5.2 연합회 사무국

- 1) 사무총장 1인과 4명 이내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
- 2) 사무총장의 임명과 임기
 - 가) 사무총장 후보자는 환경부장관이 지명
 - 나) 사무총장은 센터 연합회장이 사무총장 후보자를 센터 연합회에 추천하고 센터 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 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만60세까지로 함
- 3) 연합회의 신규직원 채용, 복무, 보수, 연구사업,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연합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4)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가) 기획관리팀
 - ①연합회 회의 관련 업무
 - ②연합회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③센터 및 연합회 관련 규정 제·개정 관련 업무
 - ④센터 공동사업 및 연구과제 중복·연계성 검토
 - ⑤센터 정기·종합평가(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 ⑥환경부, 국회, 감사원 등 관련 업무 지원
 - ⑦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

나) 재무운영팀

- ①연합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업무
- ②연합회 정관 개정 및 법인에 관한 업무
- ③센터 정기·종합평가(정산)에 관련 지원 업무
- ④연합회 직원 채용 및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업무
- ⑤센터 및 연합회 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
- ⑥연합회장 지시사항 및 기타 일반 서무에 관한 업무



[제4장]

센터 평가단 구성 · 운영

제4장 센터 평가단 구성·운영

4.1 센터 평가단 설립 목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각 센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센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센터 평가단을 구성·운영

4.2 센터 평가단 구성

- 1)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2)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단장 유고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

4.3 센터 평가단의 기능

- 1)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2) 다른 센터와의 업무 및 역할분담 조율
- 3) 사업예산을 포함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 4) 센터 사업성과 평가(정기·종합평가)
- 5)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단장의 직무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원활한 회의 주재

4.5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 1) 평가단은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서 <서식 6>, <서식 7> 작성
 - 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동향분석 타당성
 - 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다) 사업추진을 위한 센터의 인력·시설 인프라 구축 현황
 - 라) 사업계획의 명확성
 - 마) 사업계획의 성과목표·지표 선정의 적절성
 - 바) 사업계획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 국고지원의 타당성 및 효율성
 - 아) 환경보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환경보건정책, 환경성성질환 예방 관련 포함)
 - 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보건정책 조사·연구 및 사업 지원 관련성

4.6 센터 평가단의 운영

- 1) 평가단은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
- 2) 평가단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 3) 단장은 센터의 사업계획, 센터 간 업무조율 및 역할분담,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 참석요구 가능
- 4) 평가단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제 5 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제5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5.1 사업계획서 수립의 기본방향

- 1) 지정 기간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가) 센터별 지정 유형 및 목적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 수립
-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수립 시 연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수립
 - 나)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하되,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세분하여 수립
 - 다) 센터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추진
 - 라) 센터 지정목적과 관계법령 및 정책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5.2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5.2.1 사업계획의 구분

- 1) 사업계획은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서식1>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서식2>로 구분하여 수립
- 2)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는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추진계획, 소요 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작성
- 3)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는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2.2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1)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가)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 일반현황
 - 나) 지정목적 및 단위사업 관련 국내외 정책·조사·연구 등 관련동향
 - 다) 추진대상 단위사업(추진 배경·방법·체계 등 포함)
 - 라) 단위사업별 최종성과(정성·정량적 성과, 성과산출근거, 타당성 검토, 정책연계성 등 포함)

마) 기존 조사·연구 또는 센터간 사업 등과의 차별성

바) 단위사업별 기대효과 등

- 2) 센터의 장은 신규 센터 지정 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서식 1>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5부 제출

5.2.3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1) 센터 심사단은 센터지정의 목적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해 지정 및 재지정 평가시 <서식6>에 따라 검토

- 2) 환경보건센터 연합회는 신규지정 및 재지정된 센터의 유효기간 사업계획서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환경보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 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복성 검토·조정 제외

- 3) 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 사업계획서에 대해 센터 심사단의 검토의견과 연합회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센터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효기간 사업계획서를 확정·제출

5.2.4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1)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가)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사업추진체계(타 기관과의 협력 등) 등 일반현황

나) 사업기간, 사업개요 및 예산산출내역서 등

다) 세부사업별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세부사업내역

라)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

- 2) 환경보건센터 연합회는 센터의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사·연구사업과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센터에 통보, 센터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계획을 확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 검토의견서 첨부

※ 센터가 공동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중복성 조정 제외

- 3) 센터의 장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서식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해당년도 사업개시 20일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15부 제출

5.2.5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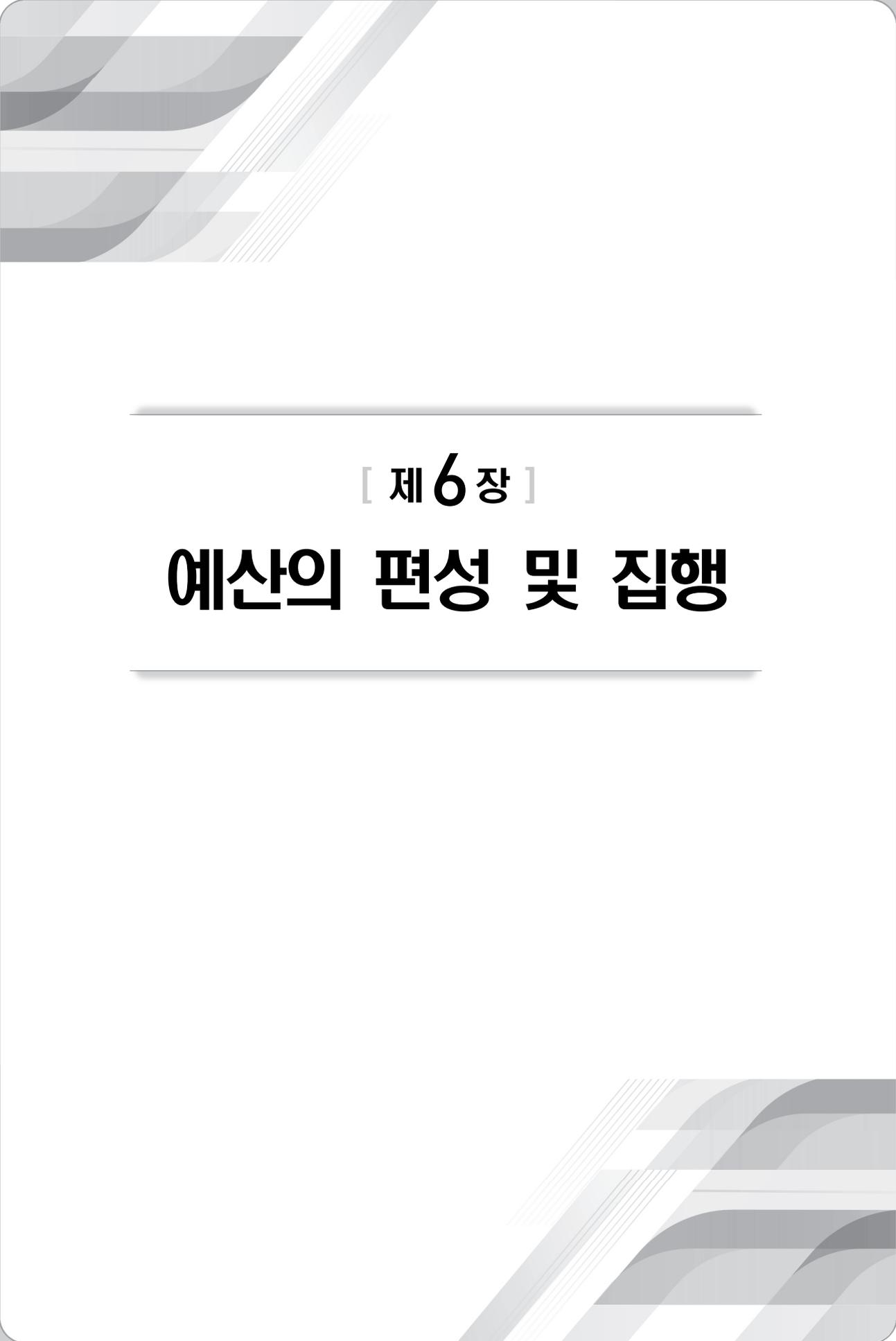
- 1) 센터 평가단은 정기평가 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식7>에 따라 검토
- 2) 환경부장관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 센터 평가단에서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센터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확정·제출

5.3 사업계획의 변경

- 1)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참여연구원(참여율 등)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5.4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1)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작성
 - 가) 동일한 단위사업 일지라도 세부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을 작성하고, 세부사업별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
- 2) 사업계획서 내의 사업은 국가보조금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과 다른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구별하여 작성



[제 6 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1 관련 법령

센터의 예산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지침」 등을 따름

6.2 예산 편성

1) 예산편성 기본방향

- 가) 센터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므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다만, 지자체 소속의 환경보건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 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센터별 예산 실집행률이 90% 이상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편성

2) 예산안 편성체계



※ 지자체 소속 환경보건센터는 정부안 및 확정예산이 통보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행정안전부)을 통한 보조사업 등록 추진

3) 예산안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한

- 환경보건센터장 → 환경부장관(전년도 4월 10일까지)
- 지자체 소속 환경보건센터장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전년도 4월 5일까지) → 환경부장관(전년도 4월 10일까지)

나) 센터별 신청서류

- 환경보건센터장 : <서식 4>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지자체 소속 환경보건센터장 및 관할 시·군·구 : <서식 4>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 : 시·군·구에서 제출한 <서식 4>을 검토·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4) 신청 대상사업(단위사업별)

가) 환경요인과 질환 간 상호작용 연구사업

나)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지원 사업

다) 권역별/지역별 환경보건계획 수립 지원사업

라) 지역 환경보건 대응 및 전문가 육성, 청원,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등 관련 사업

마) 국가환경보건센터의 각종 조사 지원사업

바)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환경보건정책 홍보사업

- 환경성질환의 경우 정보 및 예방가이드라인 제공사업 포함

사) 센터 운영경비

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환경부 승인 받은 사업에 한함)

5) 예산편성기준 : 별표 2 참조

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되, 민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물사업비 비목을 추가

- 다만, 지자체 소속 환경보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 나) 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및 책걸상 등 자산취득형 비품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여 구축
- 다) 주관기관은 연간 총 사업비의 30%를 현금·현물로 확보(매칭펀드)하여야 하며, 현물로 부담할 경우 현물 활용의 필요성 및 활용가치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현물사업비로 예산 편성
 - ※ 사회적 현안 발생으로 환경부에서 추가과업을 부여하고 추가 교부한 국고보조금, 정기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매칭펀드 제외
- 라) 연구·시험·분석을 위한 장비 등은 임차를 금지*하고, 환경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매칭펀드로 편성·집행 가능
 - * 센터 지정시 연구시설·장비 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 ※ 환경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로 편성·집행 가능
- 마) 연구 용역사업은 가급적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외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검토서 첨부)
- 바) 국외출장은 사례조사, 연구성과 발표(구두)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국외여비는 국고 50%, 매칭펀드 50%(현금)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연간 500만원 한도, 1인/회에 한함)
 -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 가능
- 각 센터는 연간 해외출장계획서를 연합회에 제출하고, 연합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통합을 권고할 수 있음
- 각 센터가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 국외출장계획서를 사전에 센터 연합회에 제출하고, 출장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환경부, 연합회, 다른 센터에 배포하여 획득한 정보와 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6) 환경부(지자체)의 예산안 검토·조정 기준

가) 정책적 관점

- ① 예산 신청사업이 센터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② 사업추진의 타당성, 시급성이 있는지 또한 장애요소(민원 등)가 있는 지
여부와 해소 가능성 여부
- ③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예산 지원시 자금의 사장(死藏)
등 국가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나) 실무적 관점

- ① 신청한 사업이 대상사업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 ② 사업계획에 다수의 단위사업이 혼합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로 구분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정부의 회계년도(1.1~12.31)에 맞추어 신청하였는지 여부
- ④ 다른 행정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 다른 법령에 의해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센터 예산사업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⑤ 예산 신청금액의 소요 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여부
- ⑥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전년도말 기준으로 예상 사업진도 및 집행률
현황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검토되었는지 여부

6.3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1) 집행 및 결산관리의 기본방향

가)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 관리 추진

- ① 센터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집행계획 수립
·점검 등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

- ② 센터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분기별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③ 매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전이라도 인건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 예산을 미리 국고교부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 도모
- 다) 국회 결산심의에 대비한 결산 보고체계 구축
- ① 회계년도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취합·분석
- 라) 보조금 이력정보, 집행 등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지출
-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 가) 보조금 교부신청(환경보건센터장→환경부장관/지자체 소속 환경보건센터장 및 해당 시군구→관할 시·도지사→환경부장관)
- ① 센터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4>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장관→환경보건센터장/환경부장관→관할 시·도지사→지자체 소속 환경보건센터장 및 해당 시·군·구)
- ① 환경부장관은 센터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해 다음 착안사항을 중점 검토
 -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종류 및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사업 구분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매칭펀드의 부담능력 유무 등
- 다) 보조금의 집행기준 : 별표 2 참조
- ① 공통사항
 - ㉠ 센터의 매칭펀드는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하되, 현금은 센터의 전용계좌로 납입(국고보조금도 센터의 전용계좌에 입금)
 - ㉡ 예산은 센터 자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등에서 집행 가능

- ㉔ 센터의 예산집행은 계좌입금 또는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
- ㉕ 연구기자재 사용료, 전화료, 전기료 등 센터 운영비는 연초에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용을 월별로 납부(간접비 집행 금지)
- ㉖ 센터장은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
- ㉗ 집행 관련 장부 및 지출증빙서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 ㉘ 매칭펀드를 국고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함(자치단체 제외)
- ㉙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적정가격을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5천만원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지자체에 위탁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적정가격을 비교·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㉚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50만원 이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함
 - 센터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하고,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환경부는 센터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시스템에 공시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② 비목 및 세목간 전용 가능금액

- ㉠ 비목별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목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불가
- ㉡ 세목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조정할 경우 자체전용이 가능하나, 타 목에서 임차료, 재료비, 국외여비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 자체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세출과목별 집행 및 정산 기준

(인건비)

- ㉠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50% 미만으로 계상
- ㉡ 센터의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을 따르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성과금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인건비 예산편성금액의 10% 미만으로 집행 가능)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야근,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고, 초과근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 정산 증빙서류는 △참여인력확인서(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참여인력현황표(이름,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등), △초과근무대장,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일반수용비)

- ㉠ 회의개최시 전문가 참석수당은 1일당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50,000원(1회 한정) 지급, 강사수당은 대학 학장급 또는 공무원 국장급 이상은 시간당 20만원 이내, 교수 등 기타 전문가는 시간당 15만원 이내 지급
- ㉡ 세미나(학회) 등의 가입비, 참가비는 국내학회만 인정, 연회비는 불인정
- ㉢ 정산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서, 전문가 수당은 추가로 △회의결과보고서(참석자 서명부, 회의록, 전문가의견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 회의건에 대해 복수 목의 지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는 1번만 제출

(공공요금 및 제세)

- ㉠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10% 미만으로 계상
- ㉡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대상인력에 대해 4대보험 가입 및 회계담당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 주관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센터에서 직접 현금출납하지 않는 경우, 센터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센터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 ㉢ 센터 운영비는 연초에 주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월별로 납부

(특근매식비)

- ㉠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특근매식비로 지급

* 특근매식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하되, 반드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㉔ 정산 증빙서류는 △초과근무대장, △특근매식비 지출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여야 함

(임차료)

- ㉑ 차량 임차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상
- ㉒ 회의장 및 행사장 등의 임차는 주관기관 등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㉓ 연구·시험·분석을 위한 장비 등은 원칙적으로 임차가 금지되며, 필요시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매칭펀드로 편성·집행 가능
 - ※ 환경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로 편성·집행 가능
- ㉔ 정산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계약서(가격검토 및 입찰 등 관련 서류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장비 유지비)

- ㉑ 차량유류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시설·장비·기구·비품 등의 유지보수비
 - ※ 센터 지정이전부터 주관기관에서 소유한 장비, 센터 사업을 위한 전용장비가 아닌 경우등은 시설장비유지비 불인정
- ㉒ 정산 증빙서류는 △차량운행일지(출장내역, 운행거리, 주유내역 포함), △유지보수계약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료비)

- ㉑ 단가 10만원 이상 주요 연구·실험분석용 소모품에 대해서는 [서식 9]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
- ㉒ 연구·실험분석용 소모품은 구매대상과 소요 내역, 산출근거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추가 구매 가능

(여비)

- ㉠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5% 미만으로 계상
- ㉡ 주관기관의 여비규정을 따름,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 운임은 실비, 일비는 2만원/일, 숙박비는 실비(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한도), 식비 2만원/일
 - ※ 근무지내 출장(같은 시군 내, 왕복 12km 미만)시에는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고 센터의 차량을 이용시에는 1만원을 감액 지급
- ㉢ 센터 참여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출장비, 사업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 및 학회·세미나 참석 등의 국외출장, 센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출장, 국내여비 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은 불인정
 - * 부득이한 경우 제주도 이외 출장지로 이동시 항공이용은 가능하나, 해당출장지까지의 KTX 또는 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 ㉣ 정산 증빙서류는 △출장보고서, △여비지급내역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증빙서류, △이체내역서, 수령확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업무추진비)

- ㉠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5% 미만으로 집행
- ㉡ 외부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에 한하여 소규모 금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식비 인정
 - * 1인당 금액한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액 준용
- ㉢ 사업목적외, 증빙서류 미비, 내부자간 회의에 사용된 비용, 호텔, 유흥주점, 골프장 등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의 사용 및 주류구입이 포함된 경우 불인정
- ㉣ 월정직책급은 센터장에 한하여 지급

* 연합회장을 겸임하는 센터장은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㉓ 정산 증빙서류는 △회의결과보고서(회의록, 회의자료, 참석자 서명부 포함), △지출결의서, △물품구입 및 식비 등 지출증빙서류(카드매출 전표,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위탁연구개발비)

- ㉔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10% 미만으로 계상
- ㉕ 자체연구가 곤란하여 위탁연구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문가 회의를 거쳐 외부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집행(검토서 첨부)
- ㉖ 정산 증빙서류는 △위탁연구 타당성 검토서, △위탁연구계획서, △위탁연구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현물사업비)

- ㉗ 현물 활용의 필요성 및 활용가치 등을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계상
- ㉘ 정산 증빙서류는 △현물 활용계획서(목적, 산출내역 등), △주관 기관과의 사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 ①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㉔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㉕ 센터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 ㉖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㉗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마)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환경보건센터장→환경부장관/지자체 소속 센터장 및 해당 시·군·구→관할 시·도지사→환경부장관)

①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

㉠ 제출기한(센터→환경부)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사업수행상황보고서<서식 5>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센터에서 관련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 조치요구

바) 사업추진실적보고(환경보건센터장→환경부장관/지자체 소속 센터장 및 해당 시·군·구→관할 시·도지사→환경부장관)

①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 폐지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자료(연구결과 및 DB등을 포함한 CD자료)

-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을 보조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은 후 제출(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사) 보조금액의 확정(보조금의 정산)

①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후 센터에 통보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름

아) 검사 및 확인

- ①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센터장에게 보고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검사·확인
 - ② 검사·확인시기
 - ㉠ 보조금 예산 신청 시 또는 교부결정 시
 -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 시
 - ㉢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보고 시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 7 장]

사업성과 평가



제7장 사업성과 평가

7.1 평가목적

센터의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해년도 예산지원 금액결정 및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 평가근거 : 「환경보건법」 제26조의2

7.2 평가종류

1) 정기평가 : 연 1회 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

※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

2) 종합평가 : 센터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7.3 평가대상 사업

1) 정기평가는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추진한 단위사업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센터의 유효기간 동안 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2) 신규 지정된 센터로서 평가기간이 1년 미만인 센터는 성과보고서를 제출 하되, 정기평가 대상 센터에서 제외

7.4 평가기관

1) 환경보건센터평가단에서 평가하되, 평가단의 단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는 단원이 실시

2) 다만, 평가단장 유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평가단장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업무도 함께 수행

7.5 평가시기

1) 정기평가의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센터별로 전년도 사업 실적과 해당년도 사업계획을 당해년도 2월에 평가 실시

- 2) 종합평가는 센터의 유효기간 종료 전 2개월 이내 평가
- 3) 환경부장관은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통지

7.6 평가기준(법 시행령 제20조의2)

1) 정기평가

- ①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②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 ③ 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종합평가

- ①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 ②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 성과와 사업목적간의 부합성, 성과의 난이도 및 달성도

7.7 평가서 작성 및 검토

1) 정기평가

가) 센터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기간 내에 달성한 사업성과를 <별표 3>의 센터 평가표를 작성하고 동 평가표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15부 제출

나) <별표 3>에 의한 센터 평가표에 의해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지정목적에 따른 단위사업별 달성도

※ 성과달성 및 난이도 관련하여 평가대상연도 연구사업 내용과 난이도 자체 평가의견(이행시 어려움 및 해결 노력 등) 및 근거 등을 <서식 8>에 따라 제출(5페이지 이내 요약)

-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환경보건 교육·홍보 실적 등

2) 종합평가

가) 센터장은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동안 달성한 사업성과에 대하여 <별표 4>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5부 제출

나) <별표 4>에 의한 센터 평가표에 의해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유효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연구개발, DB구축 등)
- 유효기간 종료연도의 홍보 등 추진성과

3) 환경부장관은 센터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가) 정량평가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진행하고, 현지조사는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 기술적 정량평가를 위해 별도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 가능

나) 환경보건센터평가단 최종평가 이전까지는 점수를 비공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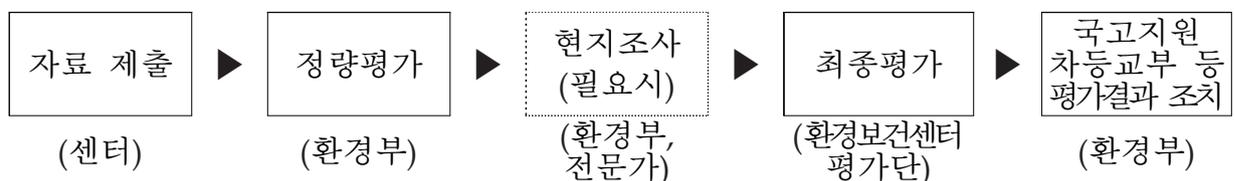
4) 환경보건센터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별표 3-1>, <별표 4-1>에 의한 센터 환경보건센터평가단 평가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 점수를 배점

5)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7.8 평가배점 및 방법

1) 센터의 성과평가는 정량평가 후 환경보건센터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정성평가 등 최종평가 실시

2) 평가절차



7.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7.9.1 조치기준

- 1)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센터의 예산 조정 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을 추진
- 2) 사업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결정된 센터에서 당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

7.9.2 세부 조치사항

- 1) 정기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센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증액 교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음
 - ※ 평가결과로 증액된 금액의 10%는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인력의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
- 2) 정기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센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 3)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센터는 지정취소되며,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재지정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지정취소됨
- 4)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센터는 유효기간 종료년도의 12.31일까지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음
- 5)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서 재지정 받은 센터는 다음연도 교부예정 국고보조금의 확보상황을 감안하여 증액 교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음
- 6) 그 외 부정한 예산집행 등에 따른 경고사항은 평가결과에 반영(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경고조치)



[제 8 장]
보 칙



제8장 보 칙

8.1 비밀유지

- 1)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의 발표 및 홍보, 자료제공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보고
가) 환경부장관은 일부 중대한 결과 및 홍보에 대해 직접 공개 또는 홍보
- 2) 환경보건센터평가단 및 자문위원회 위원, 센터 및 협력기관 직원 등 관계인은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 금지
- 3)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 센터장은 센터사업 중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 미확정 정책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정책혼선 및 사업시행자의 이익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보안관리에 유의

8.2 센터의 재산관리

- 1) 주관기관의 장 및 센터장은 센터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 2) 센터장은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관리

8.3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1) 기존에 국고보조금으로 구매된 물품 및 장비 등은 환경부 소유로 하되, 당해 센터에 무상양여방식 관리
- 2)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는 센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분 또는 당사자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구분하되, 환경성질환 및 질환자 등에 대한 DB는 환경부 소유로 관리
- 3)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는 환경부로 하고, 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해 특허출원 및 논문게재를 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914(2010.10.17)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509(2011. 8.31)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 및 석면질환을 환경보건센터 지정대상 환경성질환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22(2013.1.22)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성과평가 중 이월·불용액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환경보건센터 사업성과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371(2013.9.23)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551(2014.10.02)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2014년도 환경보건센터 사업성과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055(2015.11.30)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2015년도 환경보건센터 사업성과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638(2016. 9.22)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650(2019.10.15.)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검토, 사업성과 평가 관련 사항은 2020년도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센터 지정 심사방법

○ 심사 종류, 심사항목 및 배점

서면심사		현지실사	
심사항목	배점(80)	심사항목	배점(20)
① 센터의 사업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35	① 센터 사무실의 별도 확보 여부	7
② 센터 인력 및 조직 구성이 사업수행에 적합할 것	10	② 연구·시험·분석 등을 위한 시설의 확보 현황	7
③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	10	③ 기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	6
④ 시설·장비, 협력기관 등 사업 수행 여건 및 능력	15		
⑤ 지정분야 연구 및 사업 실적	10		

- 서면심사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을 산정하여 그 합으로 함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되,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1위 기관만 실시
 - 현장심사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을 산정하여 그 합으로 하되, 현장심사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점수를 전체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함
- 최종 점수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총합으로 산정
 - 현장심사 이후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서면심사 시 사업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재정확보능력,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심사위원은 각 평가에 대하여 평가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심사회의 개최 후 심사현장에서 심사표 제출
- 동 기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단장이 정함
- 심사단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평가진행을 돕기 위해 간사를 정할 수 있음

[별표 1-1]

센터 지정 서면심사 평가표

심사기관명 :

심사항목	주요 착안사항	배점	평가
1. 사업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35점)	①사업목적 및 계획이 지정목적과의 부합여부	10	
	②센터 목적 및 사업목표의 구체성	1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 - 목표 및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의 적합성	5	
	④사업성과 및 정책활용성의 타당성	10	
2. 센터 인력의 적합성(10점)	①사업수행 인원의 적정성	5	
	②인력의 전문성 여부	5	
3.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10점)	①재정지원계획(매칭펀드)의 타당성	10	
4.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15점)	①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연구실 등 확보(센터 전용) 여부	5	
	②사업내용에 따른 관련 기자재 및 시설·장비의 확보 여부	5	
	③협력기관 현황 및 협력계획의 적절성	5	
5. 관련 연구 및 사업실적 (10점)	①센터사업 관련 연구·사업 실적	5	
	②환경보건분야 관련 ·사업 실적	5	
종합평가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1-2]

센터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

심사기관명 :

심사항목	주요 착안사항	배점	평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①센터 사무실의 별도 확보 여부	7	
	②연구·시험·분석 등을 위한 시설의 확보 현황	7	
	③기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	6	
종합평가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목	세목	편성 및 집행 기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와 매칭펀드를 합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50% 미만으로 계상 ◦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 봉급, 수당, 퇴직금 등 각종 보수(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은 제외) 및 성과급 ◦ 성과급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인건비 예산편성금액의 10% 미만으로 집행 가능)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행사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신문·도서 등 간행물 구입비, 책결상·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우편송금 수수료, 등기료 등) ◦ 직원 및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피복 및 실험용 가운 등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 센터 자체 또는 연합회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심포지움, 포럼,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강사료 ※ 자체 강사를 활용할 경우 미지급
	공공요금 및 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와 매칭펀드를 합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10% 미만으로 계상 ◦ 공공요금 지급(전화요금, 모사전송 등의 회선 사용료 등) ◦ 제세(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부담금, 각종 보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부담금 :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 보험금 : 재정보험금 등 보험지급금 ◦ 건물 및 연구기자재 사용료, 전화 및 전기 사용료 등 주관기관과 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하는 센터 운영비
	특근 매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특근매식비로 지급(주관기관의 정규직원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하되, 반드시 센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목	세목	편성 및 집행 기준
	임차료	◦ 장비(환경부 별도 승인 필요), 시설, 차량 등의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차량 유류대, 시설·장비 등의 유지보수비
	재료비	◦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단가 10만원 이상 주요 연구·실험분석용 소모품에 대해서는 [서식9]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
	기타 운영경비	◦ 센터 연합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 연합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연도별 공무원 예산안 세부작성 지침”과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용
여비		◦ 국고와 매칭펀드를 합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5% 미만으로 계상 ◦ 주관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되, 여비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근무지외) 운임은 실비, 일비는 2만원/일, 숙박비는 실비(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한도내), 식비 2만원/일 지급 - (근무지내) 같은 시군/섬 내 또는 왕복 12km 미만,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고, 업무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
	국내여비	◦ 센터 참여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경비 ◦ 외부강사 초청에 따른 여비(숙박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여비	◦ 센터 참여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경비 - 사례조사, 센터 지정분야 구두발표를 위한 학회 등 참석시 인정 (연간 500만원 한도, 1명/회에 한함) - 국고 50%, 매칭펀드 50%(현금)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 가능 - 센터 내부결재를 득한 국외출장계획서를 센터 연합회에 제출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와 센터 연합회에 제출 ※ 주관기관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목	세목	편성 및 집행 기준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와 매칭펀드를 합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5% 미만으로 계상
	일반업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비용, 연회비용 및 기타 제경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호텔,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 제한
	월정직책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직책급으로 월50만원까지 계상 가능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와 매칭펀드를 합한 현금예산(기타운영경비 제외)의 10% 미만으로 계상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및 주관기관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다른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연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연구비 계상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요청하는 사업은 연구개발비 배분 상한액(10%)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계상 가능
현물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분석장비, 의료기기 등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센터에서 사용횟수, 1회당 사용비용 등을 감안하여 장비의 사용비용을 현물 사업비로 계상 가능 - 사무공간은 제공내역(면적, 사용료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외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의 현물은 불인정 ◦ 현물 활용의 필요성 및 활용가치 등에 대해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현물사업비로 계상

[별표 3]

환경보건센터 정기평가표

센터명		센터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지정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계		100점	
1. 사업 달성도		55	
가. 사업 목표 및 성과 달성도 (정성평가, 상대평가)	*정성평가, 상대평가	30	
나. 사업 난이도 (정성평가, 상대평가)	*정성평가, 상대평가	15	
다. 최종성과물 달성도	*최종성과물 제출여부	10	

2. 환경보건 교육·홍보 실적		20	
가. 학술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국외 연구논문 게재건수		5	
나. 보도자료 배포 및 기고문 게재건수		7	
다. 환경보건 교육·행사 건수		8	

3. 센터 협업도		10	
가. 센터간, 연합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 유관 기관 등과 협업건수		5	
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정책 협업건수		5	

4. 기타		-8~15	
가. 결산 등 관련기관 지적건수(최대 4건)	1건당 1점 감점	-4~0	
나. 매칭펀드 현금 확보(최대 30%)	5%당 1점 감점	0~10	
다. 예산 이·불용액 발생여부 (최대 30%)	10%당 0.5점 감점	-2~0	
라. 각종 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여부(최대 5건)	미준수 1건당 0.4점 감점	-2~0	
마. 센터 자체 예산 집행시 1점 가점	*결산, 센터의 증빙자료 확인	1	
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적률		0~4	

1. 사업 달성도 (55점)

가. 사업 목표 및 성과 달성도 (30, 정성평가·상대평가)

* 전문가별 점수결과의 합산으로 순위 결정

□ 사업결과의 신뢰성, 타당성,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등 질적 달성정도

-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 시설, 장비 구축 및 사업비 산정은 적절한가?
-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 결과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 평가단이 채점하고, 센터별도 획득한 총합계 점수를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하여 상대점수 배점

급간별 센터 개수	배 점
최상위 2개소	30점
차상위 5개소	25점
하위 2개소를 제외한 다음 차상위 센터	20점
하위 2개소	15점

나. 사업 난이도 (15점, 정성평가·상대평가)

□ 센터 지정 목적을 고려한 해당년도의 단위사업별 사업목적 및 내용, 최종성과물 설정의 적정성

- 단위사업 설정이 적절한가?
- 단위사업별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단위사업별 비용, 기간, 추진일정이 적절한가?

- 목표의 난이도를 고려한 성과지표의 적극적 설정 정도
- 평가단이 채점하고, 센터별도 획득한 총합계 점수를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하여 상대점수 배점

급간별 센터 개수	배 점
최상위 2개소	15점
차상위 5개소	13점
하위 2개소를 제외한 다음 나머지 차하위 센터	11점
하위 2개소	9점

다. 최종성과물 달성도 (10, 정량평가)

- 당해년도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를 100%, 90~100%미만, 80~90%미만, 80%미만 달성 등 각 급간에 따라 배점

* 연구논문은 센터장 및 소속 연구팀이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참여했을 때만 실적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의 달성여부
- 본 항목에서는 사업내용의 질적평가가 아닌 계획된 사업의 수행 완료 및 최종성과물 제출 여부를 확인

달성율	배점
100% 달성	10점
90~100%미만	8점
80~90%미만	6점
80%미만	4점

2. 환경보건 교육·홍보 실적 (20점)

가. 학술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국외 연구논문 게재건수 (5, 정량평가)

- 연구논문 게재건수 3건 이상, 2건 이상~3건 미만, 1건 이상~2건 미만, 1건 미만 등 각 급간에 따라 배점

- * 당초 센터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논문은 1건당 0.5건으로 인정

구분	배점
3건 이상	5점
2건 이상~3건 미만	4점
1건 이상~2건 미만	3점
1건 미만	0점

나. 보도자료 배포 및 기고문 게재건수 (7, 정량평가)

- 연구결과 보도 및 기고문(3건, 최대 5점), 행사보도(3건, 최대 2점) 분류하여 배점

- * 환경보건정책 및 센터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연구결과 보도·기고문		행사	
구분	배점	구분	배점
3건 이상	5.0	3건 이상	2.0
2건	3.2	2건	1.2
1건	1.6	1건	0.6

다. 환경보건 교육·행사 건수 (8, 정량평가)

- 행사 및 교육건수가 17건 이상, 11~17건, 6~11건, 6건 미만, 없음 등에 따라 배점

- * 환경보건센터연합회가 주최하는 포럼, 워크숍 등의 건수 인정
- * 각 센터 및 연합회에서 제작·배포하는 발간물은 1건당 0.7건으로 인정
- * 사회적 환경보건 이슈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만점 인정(환경부 사전협의)

구분	배점
17건 이상	8점
11건 이상~17건 미만	6.5점
6건 이상~11건 미만	5점
6건 미만	3.5점
없음	0점

3. 센터 협업도 (10점, 정량평가)

센터 간 또는 연합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건수

- * 센터간 협업시 단순 홍보·교육 협업은 불인정(강사지원, 주관기관내 행사 등)
- * 협업시 기관 간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는 경우 인정(단순 비용 지원은 불인정)
- * 지역의 지자체,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포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의 정책 협업 건수

-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의 협업건수는 진료지원 30명 당 1건, 건강 나누리캠프 협업건수는 참여개최 회수 당 1건 인정

유관기관 협업도		정책 협업도	
구 분	배 점	구 분	배 점
7건 이상	5점	7건 이상	5점
3건 이상~7건 미만	3점	3건 이상~7건 미만	3점
1건 이상~3건 미만	2점	1건 이상~3건 미만	2점

4. 기타 항목 (-8점 ~ 15점)

가. 결산 등 관련기관 지적건수(-4점 ~ 0점)

지적건수 1건당 1점 감점, 최대 4회까지 감점

나. 매칭펀드 현금 확보 (10점)

매칭펀드(30%) 중 현금 확보율에 따라 배점

현금확보율	배점
80~100%	10점
70~80% 미만	8점
60~70% 미만	6점
50~60% 미만	4점
30~50% 미만	2점

다. 예산(매칭포함 현금 기준) 이·불용액 발생여부(-2점 ~ 0점) (12.31, e나라
도움 잔액상)

예산 이·불용액 발생 5%당 0.5점 감점, 최대 15%까지 감점

발생정도	배점
100만원 ~5% 미만	- 0.5점
5~10% 미만	- 1점
10~15% 미만	- 1.5점
15% 이상	- 2점

라. 각종 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여부 (-2점 ~ 0점)

제출기한 준수여부 미준수 1회당 0.4점 감점, 최대 5회까지 감점

마. 센터 자체 예산 집행(1점)

결산, 센터의 증빙자료 확인(법인화를 통한 센터 자체 집행만 인정)

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적률(4점)

상세코호트 추적률 95%이상, 90~95% 미만, 85~90% 미만, 80~85% 미만에 따라 배점

추적률	배점
95% 이상	4점
90~95% 미만	3점
85~90% 미만	2점
80~85% 미만	1점

[별표 4]

환경보건센터 종합평가표

센터명		센터장 성명	
지정기간		지정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계	-	100점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평균값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평균값*0.4)	40점	
2. 사업성과(정성평가)	-	45점	
- 성과물의 지정목적 부합성, 난이도 및 달성도(35점)	성과의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10	
	성과의 달성도	9	
	성과의 난이도	9	
	최종성과물의 적정성	7	
- 환경보건정책 기여도 (10점)	사업성과의 정책연계성	10	
3. 유효기간 종료연도의 홍보 등 추진성과	-	15점	
	환경보건 교육·홍보 실적(정기평가 배점을 9점 만점으로 환산)	9	
	센터 협업도(정기평가 배점을 2점 만점으로 환산)	2	
	기타 항목(정기평가 배점을 4점 만점으로 환산) * '예산 이·불용액 발생여부' 평가제외	4	

[별표 5]

환경보건센터 연합회 사무총장 및 상근직원의 자격기준

구분	사무총장	2 급	3 급	일 용 직
자 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환경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환경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취득 후 환경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환경관련분야 12년 이상의 근무경력소유자 ◦위 요건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환경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환경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환경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소유자 ◦위 요건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환경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계약·경리업무 및 워드·PC 등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경리업무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며 계약·경리업무 및 워드·PC 등의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위 요건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워드·PC 등이 가능한 자 ◦위 조건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식 1]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주관기관명: _____)

* 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작성양식은 변경 가능)

I. 일반현황

지정분야 :

사업기간 :

센터의 구성도

(센터구성도 그림)

참여인력현황

순번	직책	이름	소속/직위	학력	경력	비고 (담당사업명)
1	센터장					
2	사무국장					
3						

(센터장, 사무국장, 파트별 책임자 등 주요인력의
이름, 학력, 경력 및 전체 구성인력 현황 기재)

II. 그간 추진성과 및 미비점(재지정 경우 한하여 작성)

단위사업명

○ 개요

○ 세부과제 내용

- 사업성과 및 성과물
- 미비점 또는 개선방안
 -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기재

단위사업명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0000 사업
 - 사업내용 : 어떤 내용이고 언제부터 몇회 운영했는지 작성('00~, 00회) 등
- 0000 사업
 - 사업내용 : 어떤 내용이고 언제부터 몇회 운영했는지 작성('00~, 00회) 등
- 미비점 또는 개선방안
 -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기재

Ⅲ. 사업 추진계획

센터의 필요성

○

추진목표 및 내용

○

타기관/연구 등과의 차별성

○

단위사업별/연차별 추진목표 및 내용

단위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부추진계획

1. 단위사업명

- (필요성)
- (사업목표)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내용 등
-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2. 단위사업명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단위사업명	성과지표	목표치(5년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증빙자료
		'00	'00	'00	'00	'00			

* 단위사업별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IV.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단위사업명	소요예산(천원, 국고+매칭펀드)					매칭펀드 확보계획
	계	00년	00년	00년	00년	
						현금 0%
						현물 0%(내역)

[서식 2]

당해년도 사업계획서(0000년)

<센터명 : >

I. 일반현황

센터의 구성도

(센터구성도 그림)

센터 구성내역

(센터장, 사무국장, 파트별 책임자 등 주요인력의
이름, 학력, 경력 및 전체 구성인력 현황 기재)

사업추진체계

II. 사업개요

사업기간 : (1년간)

보조사업자명 : (주관기관장)

예산현황

재원형태	예산액(천원)	비고
계		
국고보조		
매칭펀드(현물)		
매칭펀드(현금)		
지자체(00도/00시군)		
...		

사업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계	국고(%)	매칭펀드(%)
계			
1. 단위사업명			
1-1. 세부사업명			
2. 단위사업명			
2-1. 세부사업명			
2. 단위사업명			
2-1. 세부사업명			

Ⅲ. 지출예산

□ 비목별 예산

산출근거		예산액(천원)	산출근거
목	세목		
인건비	보수		단가 0원 × 0명 × ... = 0원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 운영경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업무내용, 횟수, 인원, 단가 등
	국외여비		
	소계		
업무추진비	일반업무비		
	월정직책급		
	소계		
연구개발비	조사연구비		
	정책연구비		
현물사업비	현물사업비		
합 계			

□ 과제별 예산

예산항목	예산액(천원)	산출근거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세부사업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IV. 세부 사업내역

□ 단위사업명

1. 세부사업명

- (필요성)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2. 세부사업명

- (필요성)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

V. 성과지표

단위사업명	성과지표	과거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증빙자료
		'00	'00	'00	'00			

VI.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집행계획(진척률,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서식 3]

00환경보건센터 예산요구서

(백만원)

구 분	'(N-2)예산	'(N-1)예산 (A)	'N 예산(안)		증 감 (B-A)	%
			센터안	검토안 (B)		
○ 환경보건센터 운영						

※ 국고, 매칭펀드(현물사업비 제외)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작성하고, 현물사업비는 별도 기재

1. 사업목적

○

2. '00년 예산 요구내용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단위사업명(000백만원)
 - 세부사업(000백만원)
 - 주요내용
 - 산출근거(물량, 단가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00백만원)
 - 세부사업(00백만원)
 - 주요내용
 - 산출근거(물량, 단가 등)
- 센터 운영경비(사업비 : 00백만원)
 - 주요내용
 - 산출근거(물량, 단가 등)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천원)

구분	'(N-1)예산 (A)	'N요구안 (B)	증 감 (B-A)	%
<input type="checkbox"/> 단위사업별				
○ 단위사업명				
...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 센터 운영경비				
<input type="checkbox"/> 세출예산비목별				
○ 인건비				
○ 운영비				
○ 여비				
○ 업무추진비				
○ 연구개발비				
○ 자산취득비				
○ 현물사업비				
<input type="checkbox"/> 자원별				
○ 국고				
○ 매칭펀드				
○ 00도/00시·군 등				

매칭펀드 확보계획

○

3. 최근 2년간 전용, 이월 · 불용실적

(천원)

연도	구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N-1)년	계							
	국고							
	매칭펀드							
	기타							
'N년	계							
	국고							
	매칭펀드							
	기타							

- 전용 사유 :
- 이월 및 불용 사유
 - 이월사유 :
 - 불용사유 :
- 00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4. 기타 센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서식 5]

사업수행상황보고서

(20 년 / 분기)

1. 사업개요

- 센터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율 : 국고 %, 매칭펀드 %, 기타 %

2. 사업추진현황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추진상황(추진내역, 일정, 진척률 등)
-
-

3. 분기말 예산집행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00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전년도 ¹⁾ 이월액	당해연도 ²⁾ 예산액		
계								
○국고								
○매칭펀드								
○기타								

* 집행액은 1)전년도 이월액 중 누적 집행액, 2)당해년도 예산액 중 누적집행액을 작성

3.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서식 6]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검토서

□ 센터명 :

구 분	검 토 의 견
1. 사업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지정목적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목표치의 적절성 등)	
2. 사업내용의 적절성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 추진방법·체계의 적합성 등)	
3. 인력 및 수행여건의 적합성 (인원의 적정성 및 전문성,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 등 여건 확보 여부 등)	
4.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적절성	
*기타 의견	
위와 같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div> 평가위원 ○ ○ ○ (서명)	
환경보건센터 평가단장 귀하	

[서식 8]

00년도 단위사업별 달성도 및 난이도 자체평가

(0000 환경보건센터)

구 분	성과지표	달성도						난이도 (상,중,하)
		최근 3년간(실적/달성율)			'N			
		'(N-3)	'(N-2)	'(N-1)	목표	실적	달성율	
1. 단위사업명		/%	/%	/%			%	
2. 단위사업명								

□ 목표 및 성과 달성도

1. 단위사업명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여부) 전년도 목표/실적 대비 목표치의 적합성, 유효기간내 목표달성을 위한 해당년도 목표치의 적절성 등
- (달성도) 목표 달성내역 및 성과

2. 단위사업명

□ 사업 난이도

1. 단위사업명

- (난이도 평가사유 : 지정목적과의 관련성, 타기관 등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 의미·효과, 사업추진시 어려움 및 해결노력 등)

2. 단위사업명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 개 요

- 지정근거 :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 국고지원액 : 약 3억원/년(국고보조 70%)

□ 현 황

지정분야 (지정일자)	주관기관(소재지)	주요사업 내용
소아발달장애 (2007.6.25)	단국대의료원 (천안)	- 환경요인에 의한 소아발달장애 등 정신질환 예방·관리 - 생체시료은행 구축 및 질환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아토피피부염 (2007.6.25)	삼성서울병원 (서울)	- 아토피피부염의 특성 연구, 아토피유발 검사실 운영 - 환자의 영양, 신체, 심리평가·분석
천 식 (2007.6.25)	고려대안암병원 (서울)	- 전국 대상 천식 유발 환경 요인 연구 및 천식 예방 - 특이성 분석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질환관련 정보 제공
선천성기형 (2008.6.19)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	- 출산 전·후 육체적 질환 예방·관리 연구 - 선천성기형 발생과 주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 규명
알레르기질환 (2008.6.19)	인하대병원 (인천)	- 알레르기질환 발생현황과 환경요인 연구 및 예방 -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교육홍보 가이드 개발
아토피피부염/ 비염 (2008.6.19)	제주대학교 (제주)	- 도서지역 알레르기질환 발생현황과 환경요인 연구 및 예방 - 아토피질환 진단기법 개발 및 생체시료은행 등 구축
유류유출오염 (2008.7.1)	태안군보건의료원 (태안)	- 유류에 의한 환경역학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관리 -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및 사회심리 연구
아토피질환 (2009.3.22)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 도시내 공단인근, 내륙주거, 연안주거별 아토피질환 특성 연구 및 예방
호흡기질환 (2012.4.6)	강원대학교병원 (춘천)	- 호흡기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중금속 노출 (2012.10.26)	동아대학교 (부산)	- 중금속 노출과 건강영향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유해가스 (2013.5.20)	순천향대 구미병원 (구미)	- 유해가스 노출과 건강영향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환경보건정보 (2019.5.2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	- 환경보건정보(빅데이터) 구축·분석·예측 및 정책자료 제공· 지원 - 환경부정의 평가 및 실태진단 등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지원

※ 석면질환 분야로 지정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08.6.19), 순천향대천안병원('09.2.19) 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전환('12.2.15)

※ 유해화학물질 노출 분야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15.4.1) 센터는 가슴기살균제보건센터 협력병원으로 지정('18.1)